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20일 11시 25분



목차

목차	2
등록현황	3
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기준	3

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기준

2014.04.17 조회수 562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98
담당부서	수도행정과
상위법령	수도법 제57조
규칙	여수시 수도급수공사대행업 시행규칙 제4조
유형	3호 -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
법령공표일	누락규제
존속기한	1998-04-04
규제시행/폐지일	1998-04-04
규제내용	제4조(지정기준) ①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② 제1항의 시공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이상, 토목.기계분야 초급이상 자격취득자(단, 상수도 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)로서 여수시 관내에 거주하는 자라야 한다.

목록

이전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97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99

Yeosu Web Contents

